第216回國會
(臨時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査小委員會)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12月20日(水)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 4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 4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 4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4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 4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 4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 4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 4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 4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 4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 4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 4

(11시24분 개의)

○**小委員長 千正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모두에 그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인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고 그에 따라서 8명의 위원들이 각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측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여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상 소위원회도 속기하게 되어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속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李秉錫 委員**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맡고 있는데 실제 법안소위 회의진행과정에서 속기록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출된 법안의 조항조항과 관련되어서 배석한 정부관계자,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속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법안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처리될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속기록 제도가 오늘 당장 도입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이래가지고는 회의진행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들은 고도의 정치적 논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상대방 의견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개진하고 경청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소위심사는 일정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소위에서 요청을 할 때는 이런 비공개원칙에 공개를 수시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의견입니다.

○**朴容琥 委員** 李秉錫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난해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보다는 공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속기록 문제는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발언에 대한 확인과정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속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秉錫 委員**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련법률의 발의자 또는 정부부처가 얘기하는 사이사이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속기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실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해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요.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해서 촬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비공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차피 속기사도 와있고 또 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일부의 비판을 받아왔던 소위원회의 투명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개와 속기록작성 원칙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개원한 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중에서도 소위의 첫날입니다. 그런 국회의 상징성도 좀 고려해서 오늘 회의만큼은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되 속기를 해서 기록이 남아서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회의부터 속기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지금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잘못된 관례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관련법조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안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다뤄야 되니까 이것 다룰 때까지 속기록을……

○**小委員長 千正培** 현재도 속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단서에 의해서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속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金洪信 의원 개정안의 취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위원회는 속기를 하자, 단서를 없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국회법으로도 속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속기를 하지 않으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비공개를 하되 속기는 일단 해보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해서 속기를 그만둘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일단 속기를 하면 공개되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

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좁은 회의실, 촬영하는 조명 등등으로 해서 회의장 분위기가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비공개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될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이 법안들은 국민적 관심도 많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金武星 委員** 소위원장, 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이 법안을 중심으로 잡고 발언을 합니까? 자꾸 국민적 관심이 있다고 이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小委員長 千正培**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적 관심이 있는 법안이 그것 하나 뿐인가요?

○**金武星 委員** 어제부터 개인적인 대화할 때부터 그 이야기부터 먼저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李秉錫 委員** 수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다 속기를 하고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법사 같은 데는 하는 것 같고……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법사위원입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속기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해서 속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秉錫 委員** 속기록 문제에 대한 강제원칙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원발의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속기록을……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은 오해가 있으십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는 속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속기를 안 하려면 의결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국회법 69조4항에 '소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준용하는 규정 중에서 2항에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조4항이 속기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속기를 안 하려면 위원회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金武星 委員** 지금 위원장께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속기를 하자고 강조를 하는데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투명성을 저해하자는 주장으로 오해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정치라는 것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를 고도의 정치력를 가지고 푸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을 갖다가 속기를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金武星 위원님 발언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가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속기를 하고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 회의부터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의결을 통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李秉錫 委員** 방금 金武星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느 소위원회나 속기록문제를 가지고 소위 첫 회의에 논란을 벌이는 데는 없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李秉錫 委員** 잘못되어 있다하더라도 기본관행은 기본관행대로 있는 것인데 굳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속기록을 해서 뭐하자 하는 이전에 없던 모습으로 갑자기 다가서는 이런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반하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오늘 회의는 공개해서 합시다. 언론에 공개하고 시작합시다.

○**李秉錫 委員** 나는 속기록문제를 빼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할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끝내고 다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부터 표결을 할까요? 표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첫 회의인데 대체로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엇갈린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놓

고……어떠십니까?

○**李秉錫 委員** 대단한 뭐가 있다고 속기를 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저는 원칙적으로 속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李秉錫 委員** 알고 있는데요.

○**小委員長 千正培**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金武星 委員**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사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를 하자 해서 논란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지 회의하는 중에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질 낮은 회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 8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건, 인사사문회법중개정법률안 2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건이 각각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 법안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 각 개개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전날 몇 건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지요. 접수된 순서대로 한다면 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의 법안이 제일 뒤로 가야 되겠지만……

○**小委員長 千正培** 金武星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상정을 하도록 하지요.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성질상 구별되는 법안이 분명하고 그밖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모든 법이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광의의 국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한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토론하시고 의견개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정균환 의원 대표발의)
2. **國會法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3. **國會法中改正法律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4. **國會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5.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
6. **國會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7. **國會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8. **國會法中改正法律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9.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洪信 의원 대표발의)
10.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沈在哲 의원 대표발의)
11.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김용학 의원 발의)
1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13개 중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체회의에서 물론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이 법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던 순서대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4건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1항부터 8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러면 金洪信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金洪信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수당의 계산이 의원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쉽게 말씀드려서 5월에 회기가 시작될 때 5월29일부터이기 때문에 초선의원님들은 이틀 있다가 한 달 월급이 나가므로 한 달 월급을 더 받는 것이다, 그것을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검토의견에서는 현재 아랫부분에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그리고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의원수당을 공무원보수 등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수당은 보수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이라는 성격에서 오늘까지 보수라고 하지 않고 세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지급 기준과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경우에 이러한 제안의원님의 취지대로 검토요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숫자상으로는 한 달분을 더 받는 것이지만 그러한 돈이 국회에 진입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할지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일괄상정했으니까 보고를 쭉 하세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다음은 두 번째로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검토의견 2페이지에서……

○**李秉錫 委員** 하나씩 안 하고 한꺼번에 다하면……

○**小委員長 千正培** 아까 일괄상정했습니다. 대체토론 기회를 드릴테니까, 계속 보고하세요.

○**李秉錫 委員** 수석!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李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沈在哲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시한도 연장하며 또한 서면질의 대상자를 공직후보자 외에도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특위활동기간 등의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지난 2000년6월에 여야합의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고 그래서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운영과정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인사청문기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좀더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 물론 기간의 길고 짧은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국정의 공백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당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할 때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것도 좋다는 배경으로 그런 얘기도 제기됐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서면질의 대상자를 공직후보자 외에 증인·참고인도 확대하는 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인사청문회법 제19조에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준용되고 또 이 법 제5조2항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시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질의의 대상을 증인·참고인에게도 확대하는 문제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때 신문요지를 첨부함으로써 서면질의에 갈음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새로이 제도를 바꿀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金龍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국회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이들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격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주요요지는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데, 법률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직임명권

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헌법 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규정을 원용해서 법률로 대상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에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해야 된다고 결정되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서 추가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공직자가 아닌 경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러니까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닌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은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金武星 委員** 바꾸려면 같이 바꾸어야 되겠네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렇습니다.

다음은 宋錫贊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에 맞추어서 '서류'의 의미에 디스켓과 디스크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다변화 되고 급격히 정보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변화에 맞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의한 서류제출 등의 방식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여기까지 4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다음 국회법 나머지 6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러면 국회법 제1항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원수를 현행 20인……

○**金武星 委員**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제안이유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2월8일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어느 당도 국회운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의석이 분포되어 소수정당의 조정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회법상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이전과 같은 20인으로 존치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조정역할 축소 등 원내활동을 더욱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수준에 맞추어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요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2.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에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4.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金武星 委員** 지금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20명입니다.

○**金武星 委員** 현행은 이 10을 20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5.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吳長燮 委員** 현행 어떻게 되어 있어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수정동의는 3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인입니다.

6.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20인이 10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7.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이것도 20인이 10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국회법은 일정수 이상의 의원들로 하여금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교섭단체의원들이 국회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섭단체간에 협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또한 소속정당의 정책을 국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의 이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동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구성원수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관하여는 국회운영의 능률성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상황이나 관행 그리고 국회의원수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둘러싼 찬반입장의 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소수정당의 국회의사결정 참여기회의 확대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는 다양한 의견의 전제하에 여러 정당들에 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수의석의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정치는 현실이며 따라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4·13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16대국회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의 참여도 필요하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회의사운영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인 교섭단체대표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영국, 미국 상·하원, 호주, 독일 상원 등의 경우는 교섭단체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섭단체제도를 두는 경우에도 프랑스 하원이 30인 이상, 독일 하원이 재적의원의 5%인 31인, 이태리 하원이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이 2인 이상 등 구성요건을 대체적으로 의원정수의 5%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국회법의 연혁을 보면 6대국회부터 8대국회까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하여 국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고, 16대국회의 경우에도 의원정수가 15대국회 때의 299명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만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정치적 현실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이해당사자를 전제로 한 법개정이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4·13총선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므로 총선결과의 의석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4·13 총선으로 개원된 16대국회가 국회의 오랜 관행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법개정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미국의 경우는 양당제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개념이외에 교섭단체 개념이 없고 유럽은 다당제 운영방식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교섭단체 성격이 순수한 정치동우회의 성격이 짙으며 많은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섭단체와는 그 성격이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국회의 관행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인 이상으로 한 것은 제헌국회 때부터이며 6대국회부터 8대국회까지 10인으로 완화된 것은 당시 의원정수가 200인 이하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서 현재 의원정수인 273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9대국회부터는 의원정수가 219인으로 증가됨에 따라 다시 20인으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구성요건 변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교섭단체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金武星 委員** 유신이 몇 대지요?

○**朴容琥 委員** 7대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유신으로 8대국회가 해산되고 9대국회가 생기면서 유신이후에 다시 10인에서 20인으로 변한 것 아닌가요?

○**朴容琥 委員** 맞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나. 기타 정족수완화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와 함께 의원발의정족수, 의사일정변경동의 정족수, 의원석방요구정족수, 의안의 수정동의 정족수 등을 함께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윤리심사요구나 의사일정변경동의, 자격심사요구 등의 정족수가 오히려 강화되는 등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문제와 이들 정족수의 변천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들 정족수의 완화문제는 별도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洪信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법 69조제4항에서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위원회와 같이 속기의 방법으로 의사를 기록하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속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서는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도 위원회와 같이 예외없이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에서 상설소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가 차지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위원회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할 경우 의안심사과정이나 배경 등이 상세히 기록되므로 의안심의의 객관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입법과정 및 배경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과는 달리 속기방법에 의한 소위원회회의록 작성의 의무화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협상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이견의 조정을 위해 또 다른 비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양산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속기록작성제도를 개관해 보면, 종전에는 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을 작성하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었으며…… 이 부분은 종전 15대까지는 현재 소위원회 속기록의 규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15대말에 제도개혁차원에서 여야합의로 한 단계씩 올려서 위원회는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소위원회도 종전의 위원회와 같이 속기록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소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 한 단계 올려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6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으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의무가 각각 한 단계씩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개정내용을 충분히 시행해 보지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16대 전반기 2년동안 시행해 보고 다시 논의해 보는 것도 일응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전문위원 계속 보고하세요. 이삼분 내로 보고를 마쳐주십시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다음에 3번 沈在哲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적으로 하자는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초당적 국회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제도의 도입은 의장이 여야를 초월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때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정치제도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여야가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본 바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영국하원의 경우 의장의 당적보유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장의 당적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상원은?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상원은 부통령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장의 당적이탈을 제도화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금지규정을 두는 외에 개정안 부칙 제2항에서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의장이 비례대표의원인 경우 당적이탈로 인한 의원직 상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장의 임기만료시 의원직 보유여부에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규정과 함께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정당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당적이탈을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검토내용과 같이 법문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검토의견으로 붙여보았습니다.

다음에 宋錫贊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아까 했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개정법률안 때 보고한 것과 똑같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예, 똑같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을 원용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다음에 5번 항이 되겠습니다.

金元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朴容琥 委員** 이것도 沈在哲 의원과 같은 내용이네요? 의장, 부의장이 당적이탈 하는 것……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똑같은데 다만 부의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朴容琥 委員** 부의장까지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의장단 전체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예를 들어서 자민련이 교섭단체로 등록된다면 金宗鎬 부의장이 탈당하게 해줄 것인지 정족수에 미달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吳長燮 委員** 법에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金武星 委員** 법에 안 되는데 왜 기를 쓰고 하려고 해요?

○**吳長燮 委員**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큰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李秉錫 委員**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자민련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부의장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저는 부의장제도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의장과 동일시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라는 부분을 '의장단'이라고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安商守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검찰총장을 국회출석요구 대상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법 제121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국무위원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대법원장 등 국가 주요기관의 장도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국무위원이 아닌 검찰총장도 국가 주요기관의 장으로 보아 제4항의 출석요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검찰총장을 국회출석요구 대상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법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교섭단체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다음 金龍學 의원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은 역시 아까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보고한 바를 원용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錫 委員** 金龍學 의원은 거기에다 국정원장을 포함시켰나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이것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조금 아까는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하게 하는 출석요구대상이란 뜻이었습니다.

○**李秉錫 委員** 그러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이 포함된 안은 어느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그것이 金龍學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인데 여기에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마지막으로 徐淸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淸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물리적 방해로 인해 본회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려운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권한에 대한 부의장의 직무대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조에서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0조에서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장은 그 책임하에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은 첫째로 국회의장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둘째로 물리적인 방해로 인해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려운 때에는 의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의 근본취지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첫째, 의장이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한다는 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물리적인 방해로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할 때에……

○**李秉錫 委員** 지난번처럼 감금하면 넘긴다는 것인가요?

○**吳長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말이에요.

○**李熙圭 委員** 나중에 해요.

○**首席專門委員 鄭浩永** 둘째, 물리적인 방해로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할 때에 어떠한 정도의 상황을 물리적 방해로 볼 것이며 어떤 상황을 개의 또는 의사진행이 어려운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의 판단기준이 극히 모호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그 기준의 판단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유발될 수 있고 의장의 기능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秉錫 委員** 모든 기준은 지난번 의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때 감금한 그 상황을……

○**小委員長 千正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2건의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속개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武星 委員**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속개한다는 말이에요?

○**小委員長 千正培** 오늘은 보고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로 회의를 끝내고 다시 내일 적당한 시간에 회의를 열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吳長燮 委員** 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면 본회의 일정에 차질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회의를 하고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회의가 내일 하루에 끝날지 모레 끝날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李秉錫 委員** 본회의는 1월8일도 있고 9일도 있고 그 다음에도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吳長燮 委員** 아니, 본회의가 오늘 2시에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본회의 일정에 지장 없는 범위내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吳長燮 委員** 오늘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오후에 한번 하지요.

○**小委員長 千正培** 우선 吳長燮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오후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하자는 취지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상정도 되고 오늘 첫 소위원회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당에서 신사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꾸 소위를 무리하게 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저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의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회의시간 결정은 여덟 분 각자의 개인 스케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만약 오늘처럼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 우리 당을 빼놓고 단독으로 회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엄중하게 드립니다.

절대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小委員長 千正培** 金武星 위원님 말씀을 다 하셨으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은 소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심사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도 오늘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 교섭단체간 합의과정에서도 사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했어야 할 법안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존경하는 金武星 수석부총무께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 아무런 이의 말씀이 없으셔서……

○**金武星 委員** 왜 이의 얘기가 없어요? 또 거짓말 하시네요.

○**小委員長 千正培** 아니, 지금 속기되고 있다니까 무슨 거짓말이에요?

○**金武星 委員** 그러니까 속기를 중단시켜요. 꼭 속기를 해야 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거짓말이라는 말씀은 삼가하시고 오늘 회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내일 오전에

다시 소위원회를 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李秉錫 委員** 아니, 내일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회의가 끝난 후에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두 분이 협의하세요.

○**小委員長 千正培** 어차피 소위라서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우리 당은 두 명의 위원이 빠져 있잖아요.

○**小委員長 千正培** 교섭단체가 다 모여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李秉錫 委員** 그렇게 자꾸 선을 그어서 할 필요없어요.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은 어차피 두 분이 협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은 할 테니까 李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李秉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못 박지 말고 얘기하세요.

○**小委員長 千正培**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차피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국회로 출근해야 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오전 10시라든가 적당한 시간에 계속 ……

○**金武星 委員**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하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小委員長 千正培** 아니, 무엇이 무리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朴容琥 委員** 소위가 구성되었으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李秉錫 委員** 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상위에서 소위를 구성해도 그 소위 내에서 위원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쉬기도 하고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하는데 지금 소위원장께서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는 듯한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朴容琥 委員** 그것은 오해입니다.

○**李秉錫 委員** 이런 식으로 소위를 오늘 하고 내일 오전에 하고……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李秉錫 위원님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李秉錫 委員** 그러니까 오늘 이후의 소위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두 분이 협의하세요.

○**小委員長 千正培**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번 국회가 1월8일, 9일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21일 본회의가 끝나면 1월8일, 9일까지는 대체로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더 이상 소위든 상임위든 진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공식적인 해외시찰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꾸 무리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전반기 활동의 마감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오전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안들이고 또 오늘 보고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내일 오전에 바빠서 못하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은 안 되겠어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오늘 오후에 하시지요.

○**金武星 委員**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지금 12시30분이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더 이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산회지 왜 정회합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우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왜 정회를 해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金武星 委員**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해요? 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아야지 그러면 오늘 또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小委員長 千正培** 내일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李秉錫 委員** 내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얘기를 나누어서 결정하시라는데 뭘 자꾸……

○**小委員長 千正培** 지금 金武星 위원께서 내일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金武星 委員**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니까 우선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金武星 委員** 안 돼요. 산회를 선포해야 돼요.

오늘 또 하기를 원하십니까?

○**吳長燮 委員** 오늘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金武星 委員**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심의했으면 되었지……

○**吳長燮 委員** 심의해서 전체회의로 넘겨야지요, 전체회의 일정도 생각을 해야지요.

○**李秉錫 委員** 물리적으로 내일 오전에 심의해서 넘길 수 있는 법안이 어디 있어요?

○**吳長燮 委員**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겨야지요.

○**李秉錫 委員**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회의를 끝내고……

○**小委員長 千正培** 金武星 위원님 발언에 따르면 내일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오전에 못하신다면……

○**金武星 委員**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산회를 선포하세요.

○**李秉錫 委員** 여기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은 두 분이 협의하세요.

(장내소란)

○**金武星 委員** 산회를 선포해요.

○**小委員長 千正培** 야당위원들이 안 오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속기되고 있으니까 우선 정회하고 얘기하자는 말씀입니다.

○**李秉錫 委員**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

(장내소란)

○**吳長燮 委員** 보고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千正培** 일단 정회해서 속기를 중단하고……

○**金武星 委員** 속기하면 어때요?

○**小委員長 千正培**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